

수원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759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송일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력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2. 11. 11.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51963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서 2019. 9.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110,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C에게 양도하며 대금 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4. 17. 이러한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C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미안함을 표시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직을 맡아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대표자 지위를 다시 원고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2019. 12. 10.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와 별개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해지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9. 9. 19.경 C에 대하여 108,611,600원¹⁾ 상당의 잔여 주식양도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중 일부인 3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C이 2019. 4.

17.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C이 위 계약서 작성 전인 2019. 3. 20.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C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수 없고 나머지 주식양도대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원고가 다시 이 사건 회사를 가져가주는 조건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며 원고의 주장과 달리 증언한 점, ②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2019. 4. 1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서 C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시 C에서 원고로 복구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변경은 주식처분에 수반되는 이행으로 보이고, 이 둘을 별개로 해석할 다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회사와 C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C이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원고에게 되돌려주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며 원고에 대하여 100,000,000원 이상의 주식양도대금채무를 그대로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C에 대한 108,611,600원 상당의 잔여 주식양도대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안희경, 판사 석윤민

1) 원고는 2019. 3. 11. 이 사건 회사가 T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원을 원고가

지급받는 것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였고, 2019. 3. 20. C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외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작성할 당시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액 11,388,400원을 대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잔존 주식양도대금을 $108,611,600원 (= 200,000,000원 - 40,000,000원 - 40,000,000원 - 11,388,400원)$ 으로 정리하였다.